

제286회 정례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 번호	제420호
----------	-------

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(안) 검토보고서



행정기획위원회

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(안)검토보고서

행정기획위원회
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420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1. 11. 10.
- 회 부 일 : 2021. 11. 17.

2. 제안이유

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인 “한국지방세연구원”에 법령에서 규정된 출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의 금액을 “한국지방세연구원”에 출연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(액)

-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× (1.2/10,000)

▷ 109,006,287천원 × (1.2/10,000) = 13,081천원¹⁾

1) 2022 회계연도 세입·세출예산서 458 page 상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지방세기본법	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	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1. 1만분의 1.2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
4. 검토의견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는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 및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“지방세연구원”의 설립과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, 금번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(안)은 살펴본 바와 같이 「지방재정법」과 「지방세기본법」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예산을 반영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.